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중점 추진사항

□ 추진배경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20.9.10.)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특별단속 및 관련단체(업체)에도 추진사항 안내필요

□ 추진계획

- (지도감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안정적 정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소방관서 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반 편성·운영
 - 소방본부 주관 분리발주 운영실태 소방 특사경의 수사(불시)
 - 소방시설 품질시공 저해하는 분리발주 위반자 엄중처벌(300만원 이하 벌금)
 - * (중점단속) ① 분리도급 위반 ② 불법 하도급 ③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페이퍼컴퍼니)
 - ↳ 소방청 주관 소방공사 분리발주 단속반 운영실태 및 공사현장 확인점검('21. 하반기)
- (신고센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하)도급 위반 신고시스템 상설 운영
 - 소방관서 별 홈페이지에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
 -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운영실태 정기적 모니터링(소방관서 ↔ 협회 협업)
- (홍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필요성 홍보('21년 상반기 집중홍보)
 - 소방관서는 지역 신문사, 케이블TV 등을 활용 분리발주 시행 홍보
 - 한국소방시설협회는 라디오 등 언론사 활용 분리발주 시행 등 홍보

□ 협조사항

- (소방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홍보, 기관·단체 협력 추진
- (소방관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운영실태 불시점검 등 강화
- (각 협회) 회원사에 소방시설 분리발주 의무화 추진 안내, 제도 정착에 협조

붙임 1

소방시설공사의 공동계약 검토결과

□ 검토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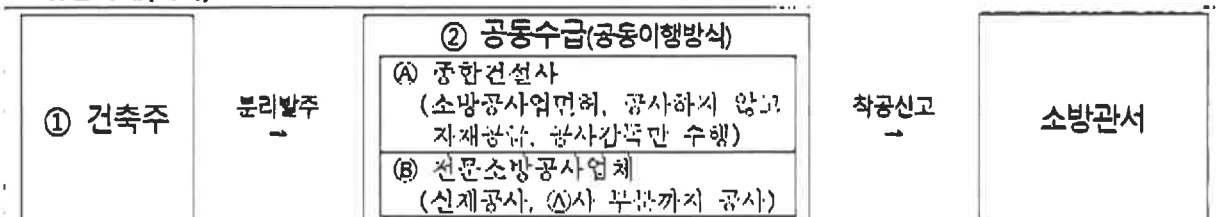
-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시행인 '20.9.20.), 소방시설공사 일부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 가능
- 소방시설공사업법은 분리도급 의무화하고 계약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지 않음,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준용하여 소방시설공사 공동계약 후 착공신고

□ 검토결과

- (정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 받아 공동 계산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특수한 도급형태(실적·면허 보완)
- 공동계약 방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도급 가능 여부

공동이행방식	• 출자비용에 의한 구성(실적보완) • 구성원 모두가 계약 면허 등 등록요건 충족 •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연대책임) ↳ 소방공사 분리도급 가능(구성원 모든 업체는 직접 소방시설 공사) ↳ (예시 1) 소방공사만 발주된 경우, 소방 자격을 갖춘 두 업체 A사, B사(분리도급) ⇒ A사(소방) + B사(소방) ⇨ 소방 하도급 불가능 (예시 2) 대형 건축물의 경우, 건설과 소방 자격을 갖춘 두 업체 A사, B사(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A사(건설 + 소방) + B사(건설 + 소방) ⇨ 소방 하도급 가능
분담이행방식	•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면허보완) • 구성원 공동으로 계약 면허 등 등록요건 충족 • 구성원별로 계약을 분담이행(각자책임) ↳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 대상공사에 한하여 가능 ↳ (예시) 소방자격이 없는 C사의 경우, 소방면허를 가진 D사와 계약하여 입찰 ⇒ C사(건설) + D사(소방) ⇨ 소방 하도급 불가능
혼합방식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소방공사 분리도급 예외 대상공사에 한하여 가능 ↳ (예시) 소방자격이 없는 C사와 E사, 소방면허를 가진 D사와 계약하여 입찰(분리도급 예외) ⇒ [C사(건설) + E사(건설)] + D사(소방) ⇨ 소방 하도급 불가능 공동이행 분담이행

※ 위반사례(예시)



- ① 건축주 : 위법사항없음
 ②-④ 종합건설사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②-⑥ 소방공사업체 : 법 제13조 착공신고 거짓신고(법 제9조제1항제12호 행정처분, 법 제40조제1항제1호 과태료)

□ 검토배경

- 現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규정만 개정(대통령령) 중*이고, 하도급할 수 있는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하도급 관련 해석 논란

* 분리도급 시행(20.9.10.)에 맞춰 예외규정(영 제11조의2)만 신속 추진(1단계)

** 하도급 할 수 있는 규정(영 제12조)은 후속으로 추진 예정(2단계)

<현행>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안>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분리도급 예외의 경우) 등에 한하여 도급하는 경우를 말한다.(의견조회 '20.12.31.~'21.1.11.)

□ 검토결과

- (기준)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해 도급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하도급 할 수 없음
 - ↳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해 도급을 받고, 동일 건축물의 건축·전기·통신 공사를 별도로 당해 업체에서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음
- (예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시행령 제11조의2)로 건축·소방 등 공사를 일괄발주하여 건축 등의 공사를 소방과 함께 도급 받은 경우에만 하도급 가능
 -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입법취지는 하도급 병폐 해소 및 품질시공하기 위한 것임

□ 향후계획

- (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21년 상반기)
- (시도)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도급 받은 경우는 하도급 금지, 다른 공사와 일괄 발주 받은 경우만 1차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 안내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35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확장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정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입찰입찰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란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